

고 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6-72호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0호(2012.1.12.)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 2014-114호(2014.11.27.)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9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
 - 나. 면 적 : 20,679.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병례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27길17 203호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6. 9. 9.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규 모				기타
				용도	동	세대수	층수(지하/지상)	
16,275.2	55,351.9	27.20	234.10	공동 주택	7	366	지하2층~지상15층	획지1
259	-	-	-	치안센타	-	-	-	획지2
214	-	-	-	근린생활	-	-	-	획지3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 대상	주택규모별 (전용면적기준 : ㎡) 공급세대수											
	계	59.94 (59A)	59.87 (59B)	74.89 (74)	75.95 (75-1)	75.95 (75-2)	84.95 (84)	84.93 (84B-1)	84.93 (84B-2)	84.96 (84C)	상가면적(㎡)	
		건축 연면적	대지 면적									
계	366	45	43	14	11	12	84	49	60	49	518.82	179.02
토지등 소유자	177	45	14	14	6	9	19	20	1	49	-	-
보류 시설	4	-	2	-	-	-	1	1	-	-	-	-
일반 분양	185	-	27	-	5	3	64	27	59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1) 신설

종 류	규 모(㎡)	비 고
도 로	1,621.7	무상귀속
공 원	2,206.8	무상귀속
공공공지	103	무상귀속
합 계	3,931.5	

2) 용도폐지

종 류	규 모(㎡)	비 고
도 로	946.9	385.5㎡ 무상양여
하 천	288	25㎡ 무상양여
공 원(공유지)	83.8	
구 거	246	246㎡ 무상양여
공 원	531	63㎡ 무상양여
합 계	2,095.7	719.5㎡ 무상양여

라. 기존건축물 철거예정 시기 : 2016년 11월 ~ 2017년 6월. 끝.

공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825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공시송달 공고

관내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건축과-17550(2016.07.20)호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기타사유)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09월 13일
동 작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연 번	대지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1	노량진동 28*-2*	이*자	- 지1층 근생 9㎡를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 - 1,3층 다가구주택(1)을 2가구로 무단용도변경, 2층 다가구주택(1)을 4가구로 무단대수선

2. 공고기간 : 2016.09.13. ~ 2016.09.27. (15일간)

3.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16.09.27.까지(동작구청 건축과)

4.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에 미시정되어 기예고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후, 안내문과 고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 송달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추후 시정명령이 이행되더라도 징수되오니 더 이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